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111
----------	-------

발의연월일 : 2026. 2. 26.

발 의 자 : 김미애 · 송석준 · 김은혜
최수진 · 강명구 · 성일종
김위상 · 김민전 · 김기현
유용원 · 한기호 · 박성훈
조정훈 의원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 예산안 심사절차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인 예산 조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히 예산안조정 소위원회 및 그 내부의 협의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또한 현행 예산 심사가 개별 사업이나 증감 항목 중심으로 진행됨에 따라 국회 차원에서 거시적인 재정 운용 관점에서의 심의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도 지적되었음.

이에 예산안 등을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부처별 지출한도를 심사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부처별 지출한도 내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록 함으로써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10항
및 제84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⑩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9항에 따른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예산안 등을 비공개로 심사·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4조제1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대해서는”을 “대해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1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예산안 및 결산 심사는”을 “예산안 심사는”으로, “분과위원회”를 “소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결과가 제1항에 따른 부처별 지출한도를 준수하였는지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3항(중전의 제4항) 전단 중 “제1항과 제2항에도”를 “제1항·제4항·제9항에도”로 한다.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부처별 지출한도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예산안에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소관 상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처별 지출한도를 준수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④ 의장은 예산안에 제3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⑤ 소관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안을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⑨ 결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⑩ 의장은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⑪ 의장은 결산에 제10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⑫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종합정책질의, 부별 심사 또는 분과위원회 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종합정책질의를 할 때 간사와 협의하여 각 교섭단체별 대표질의 또는 교섭단체별 질의시간 할당 등의 방법으로 그 기간을 정한다.

제84조의2제3항 본문 중 “제84조제1항”을 “제84조제9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7조(소위원회) ① ~ ⑨ (생략) <u><신 설></u>	제57조(소위원회) ① ~ ⑨ (현행과 같음) <u>⑩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9항에 따른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예산안등을 비공개로 심사·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u>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① <u>예산안과 결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u>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① <u>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부처별 지출한도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대해서-----</u> -----.
② <u>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에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u>	② <u>의장은 예산안에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u>

후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
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
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⑥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을 소
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
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
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
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안 및 결산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③ 소관 상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처별 지출한도를 준수
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
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④ 의장은 예산안에 제3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
한다.

⑤ 소관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
이 제3항에 따른 예산안 심사
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
은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
산안을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
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⑥ -----예산안 심
사는-----

종합정책질의, 부별 심사 또는 분과위원회 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종합정책질의를 할 때 간사와 협의하여 각 교섭단체별 대표질의 또는 교섭단체별 질의시간 할당 등의 방법으로 그 기간을 정한다.

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費目)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한 동의 요청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회부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있는 것으로 본다.

⑦ (생략)

-----소위원회-----

-----.

⑦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결과가 제1항에 따른 부처별 지출한도를 준수하였는지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신 설>

⑨ 결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신 설>

⑩ 의장은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신 설>

⑪ 의장은 결산에 제10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⑫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제84조의2(기금운용계획안의 회
부 등) ① . 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⑬ -----제1항 · 제4항
· 제9항-----

제84조의2(기금운용계획안의 회
부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